

북한인권연구에서 내재적 시각의 의의와 한계*

서보혁(한신대학교 강사)

1. 문제제기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주목을 받은 적은 없을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다양한 보고와 증언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열악하다는 국제사회의 판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 등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거나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은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 심각한 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국제사회에 소개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대부분 북·중 국경지대 출신 탈북자들에 의해 전파되고

*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곽승지, 김동한, 박호성, 신효숙, 오일환, 우평균, 이수석, 전영선 박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있으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는 주로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서구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가장 우선적인 생존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셋째,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개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 및 개선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의 이면에는 대북 인식 및 대북정책 목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놓여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가운데서 인권의 보편성과 그 실현 방법이 혼재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그것은 각각 원칙과 실제의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주제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은 천상의 인권을 지상에 구현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며, 그 과정은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한국 사회와 관련 국가 간 입장 차이는 북한인권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북한 체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를 둘러싼 기존의 내재적·외재적 ‘접근법’¹⁾ 사이의 논쟁을 평가하고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가 북한 연구시각을 재론하는 것은 1990년대 내재적·외재적 접근법으로 불린 북한(체제) 인식을 둘러싼 논쟁이 비생산적이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즉, 기존의 논쟁은 연구자의 이념적 정향이 반영된 한계를 별도로 하더라도, 논쟁이 특정 연구시각의 상대적 우위를

1) 북한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내재적·외재적 ‘접근법’을 둘러싼 논쟁은 엄격한 의미의 연구방법론상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연구시각 혹은 그 바탕이 되는 인식론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연구시각’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주장하는 식의 상호대립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구체적인 연구사례를 동반하지 않은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① 북한 연구시각이 상호 간 차이를 가지면서도 공통의 설명 대상에 가집으로써 상호의존적 관계를 떨 수 있고, ② 연구시각은 연구자의 선호도가 아니라 연구목적과 대상에 따라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인권이라는 연구사례를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로 북한 인권을 선정한 것은, 북한인권 상황 및 개선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 양상이 기존의 북한 연구시각을 둘러싼 논쟁 양상과 유사하게 대립적인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 가설을 반증하는 데 적절한 ‘중요사례(critical case)’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북한 체제 인식을 둘러싼 기존 논의를 정리한 후 본 연구사례에 적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약간의 개념 조작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내재적 시각을 적용하여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해 봄으로써 내재적 시각의 의의와 한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북한인권 논의에서 내재적 접근으로는 어려운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제기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모색해 볼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북한 정부와 유엔의 관련 문헌을 일차 자료로 삼고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참고 하였음을 밝혀둔다.

2.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내재적·외재적 시각의 정의와 특징

연구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연구시각 혹은 인식방법을 둘러싸고 전개된 북한연구학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990년대 들어서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반공질서를 지탱해 온 냉전질서가 붕괴되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북한연구 진영에서도 기존의 외재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이후 내재적 접근론자와 외재적 접근론자들 사이에 일련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한편으로 북한연구에 있어서 의식·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온 북한을 대상화해 온 인식에 일대 반성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연구시각 혹은 인식방법이 북한연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노출하였다. 여기서는 그간의 논쟁을 정리하는 대신,²⁾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념정의와 두 연구시각의 특징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내재적’·‘외재적’이라고 명명된 연구시각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논쟁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왔다. 내재적 시각을 지지한 논자들은 처음 ‘내재적’이라는 용어를 연구대상으로서의 북한 체제의 고유한 작동원리, 즉 이념과 목적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비판한다는 뜻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내재적 접근에 비판적인 논자들은 내재적 접근이 북한 체제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의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행위자를 옹호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

2) 이에 대한 종합 정리와 평가는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 방법론』(서울: 한울, 2003), 12~25, 31~39쪽 참조.

다. 그에 대해 내재적 시각에 서있는 연구자들은 “내재적이란 뜻은 우리의 인식이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정의하고, 외재적 시각에 선 연구자가 ‘외재적’이라는 말을 ‘객관적’이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외재적 시각 역시 그 의미를 다소 변경해 왔다. 처음에는 북한 사회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가 아닌 다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재적(internal) 시각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내재적 시각이 재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내재적이라는 의미를 경험에 의거한다(immanent)고 하면서 외재적 시각을 선험적(transzendental)이라고 비판하자, 외재적 시각이 반드시 선험적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 모두 논쟁과정에서 그 의미를 변경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두 시각을 ‘internal’, ‘external’이라는 의미로 규정할 경우 두 시각은 각각 제한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측에서 모두 인정하는 바로서, 내재적 시각에서도 북한 사회주의 ‘이념’과 ‘경험’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면서 내재적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외재적 시각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외재적 시각 역시 그것이 내재적 시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외재적 시각은 연구대상으로서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와 그 인식방법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같은 식으로 두 시각을 규정할 경우 두 시각은 연구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채택할 수 있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이와 달리, 두 시각을 ‘immanent’, ‘transzendental’의 의미로 파악할 경우, 논쟁은 심화된 인식론이 요구되는 철학적 논의 주제로 옮겨갈 수 있다. 다만 내재적 시각이 외재적 시각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후

내재적이라는 의미에 ‘비판적’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 점을 상기할 때, 외재적 시각이 선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즉, 내재적 시각이 정의(定意)상 비판을 담고 있지만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실제 연구에서 비판이 부족할 수 있듯이, 외재적 시각이 정의상 선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를 이념의 잣대로 과잉 비판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연구시각은 연구자의 가치관과 연구목적에 의존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그 영향이 과도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연구방법론의 역할이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북한 연구시각 혹은 인식을 둘러싼 논쟁은 연구방법론의 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본 연구의 분석틀을 수립하기 위해 두 시각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먼저 내재적 시각의 기본 특징은 관찰자가 행위자의 행동 논리와 그 목적에 관한 충분한 묘사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이 행위자의 행동 결과에 미친 영향 혹은 행동 목적과 그 실제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시각은 행위자가 거처온 역사와 행위자가 처한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설명의 매개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³⁾ 그렇지만 내재적 시각을 통해서도 행위자의 행동 전모(全貌)를 드러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할 수 있다. 내재적 시각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은 행위자와 외부세계의 상호작용이나 행위자의 변화와 같은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들도 내재적 시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자칫 잘못하면 행위자가 취하는 대내정치용 혹은 대외협

3) 물론 내재적 시각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묘사와 설명 중 묘사에 치우치게 되면 내재적 시각의 본래 특징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행위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재적 시각의 특징이 아니라 그 적용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상용 논리를 행위자의 입장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행위자와 외부세계의 상호작용이나 행위자의 변화와 같은 현상에는 행위자의 행동 원리와 목적이 외부세계의 그것과 경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세계의 원리나 목적을 수용하도록 강제받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이 내재적 시각이 가지는 유용성의 한계 범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재적 시각이 행위자의 행동 원리와 목적을 그 결과를 설명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면,⁴⁾ 외재적 시각은 행위자의 행동 원리 및 목적 전체를 관련 이론으로 연역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⁵⁾ 물론 두 시각 모두 행위자의 목적과 행동 결과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내재적 시각이 그 차이를 주로 경험적 관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비해 외재적 시각은 관련 일반 이론의 검증을 통해 설명을 시도한다는 데에 두 시각의 차이가 있다.

2)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내재적·외재적이라는 용어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두 용어는 모두 비판과 경험을 내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전제하는 가운데, 북한 사회를 그 작동원리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다른 이론의 틀로 파악하느냐의 차이로 구별된다. 이 같은 정의는 본 연구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연구에서 상호보완

4) 북한인권 상황을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에 바탕을 둔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를 꼽을 수 있다.

5) 예를 들어 박순성은 북한인권 상황을 랜드만(T. Landman)의 이론을 빌려 평가한 바 있다. Sunsong Park,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U.S. Policy,"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2005), 345~347쪽.

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에서 보자면, 내재적 시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북한의 인권관, 인권 관련 법제 및 정책 등 북한의 논리에서 파악하여 이념과 실재를 판별하는 동시에 내재적 시각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재적 시각은 내재적 시각이 파악할 수 없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⁶⁾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두 시각은 북한의 복잡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데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의 문제는 내재적 시각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서 이는 외재적 시각으로부터 보완을 받아 전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내재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두 시각의 상호보완적 적용이 자칫 절충주의로 나타나 논리적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외재적 시각이 아니라 내재적 시각을 출발로 삼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본 논의의 출발을 내재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작금의 북한인권 논의 동향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의식과 관련된다. 현 국내외의 북한인권 논의 동향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와 그 한계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일국 차원에서의 인권 보호 및 개선의 가능성, 즉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한다면,⁷⁾ 그런 논의는 내

6) 여기서 내재적 시각은 행위자(북한)의 가치관, 법제 및 정책을 파악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행위자의 행동을 평가·판단한다는 의미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재적 시각은 해당 행위자가 아닌 다른 입장에 행위자의 행동을 평가·판단한다는 점에서 ‘비내재적 시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정태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인권운동사랑방 등 주최 ‘북한인권 1차 워크숍’ 발표문(2005년 11월 30일) 참조.

재적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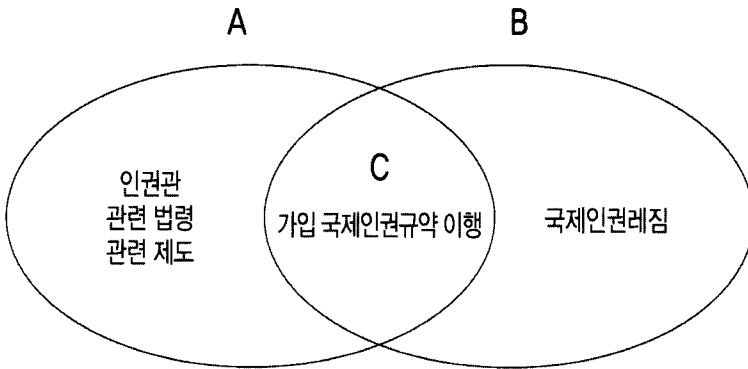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한 가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 1.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가정 2.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의 주요 분석대상은 서로 같을 수도 있다.

가정 1은 기본가정으로, 가정 2는 보조가정으로 상정하여 본 연구 대상에 적용하여 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내재적·외재적 시각에서 본 북한인권



<그림 1>에서 A는 주로 내재적 시각으로 논의되는 영역으로서 북한의 인권관,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가 포함될 수 있다. 3장과 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A에 포함되는 측면들을 내재적 시각에

서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이 되고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하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로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갖고 있는 인권관, 관련 법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평가 없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논의할 경우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의미 있는 개선 방안 수립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B는 주로 외재적 시각으로 논의되는 영역으로서 북한의 행동 원리 및 목적과 대립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B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원리, 행동 규범, 기구 등을 포함하는 국제인권레짐을 말하는데, 그것은 본 논의에서 양면적 의미를 갖는다. 그 하나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북한 밖에서 파악하는 준거로서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여 도달할 수 있는 지향으로서의 의미이다. 물론 이때 A, B를 각각 다른 시각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각 영역에 대한 두 시각의 상대적 설명력을 생각할 때 위와 같이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⁸⁾ 다만 논리적 일관성 유지와 당사국의 인권 보호 및 개선 역할의 최대치 판단 등 두 가지 필요에서 볼 때, 내재적 시각으로 출발하여 그 한계를 파악하고, 거기서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생각해 보는 순서를 밟고자 한다.

한편, C는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이 공존하는 영역으로서 북한

8) A의 경우 외재적 시각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먼저 북한의 행동 원리와 목적에 비추어 논의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내용을 더 충실히 서술하고 한계를 파악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 이에 비해 B를 내재적 시각으로 파악하는 것은 당사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인권 향상을 위한 과제 도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상황을 말한다. 북한은 4개 국제인권 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협약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C영역이 두 시각의 공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 북한이 관찰자로서의 국제인권협약위원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양측이 공유하는 동일한 기준(국제인권 협약)으로 행위자와 관찰자의 입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으며, 행위자와 관찰자의 합일점을 확대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C영역은 이론적으로는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이 동시에 적용되고 상호보완성을 확인하는 곳이며, 합리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국제협력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논의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으로 줄임)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으로 줄임)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북한인권 역시 이러한 범주에 입각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 북한이라는 용어는 북한의 정치·사회 전반을 지칭하는 체계(system)와 행위자로서의 북한 정부 등 두 가지 의미를 혼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3. 내재적 시각에 의한 북한인권 이해

북한인권을 내재적 시각을 적용해 논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관 및 관련 법제를 통하여 북한의 실제 인권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둘 사이의 조응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나타날 것이다.

1) 북한의 인권관 및 관련 법제

(1) 북한의 인권관

북한은 인권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⁹⁾ 혹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¹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의 인권관은 적어도 추상적 차원에서는 과거나 최근에 들어서나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남한을 포함한 다른 사회와도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사람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며 그것을 유린하는 행위와 투쟁할데 대한 문제”¹¹⁾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북한의 정치이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부 통치이념에서 인권 친화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다. 북한의 유일사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 간주하고 인류역사를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목적의식성을 고양하는 투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인덕정치’¹²⁾론을 당과 인민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유지를 위한 김정일의 통치담론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비차별, 대중의 권리 옹호가 담겨 있다.

북한의 인권관이 갖는 특징으로 꼽는 사항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

9)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213쪽.

10)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96쪽.

11) 『국제법 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582쪽.

12) ‘광폭정치’라고도 불리는 인덕정치는 김정일에 의해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로 정의되고, 인덕정치 구현의 장애요소로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이 지목되고 있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81~488쪽. 물론 인덕정치론이 ‘독재정권의 통치담론’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북한과 같이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경우 그의 통치론에서 인권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먼저 계급적 시각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 및 공적 소유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인권관에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헌법 제63조). 북한에서 사람, 인민대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과 ‘일심동체’를 이루고 수령과 당의 지도를 따를 때 ‘자주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가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 자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³⁾

셋째, 북한은 기본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권을 “그 누구도 침해, 유린, 훼손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¹⁴⁾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기본권 중에서도 생존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식량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기본권은 이러한 계급적 성격과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¹⁵⁾

마지막으로, 북한은 국가주권을 인권보다 우선에 놓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 “국권을 잃은 나라 인민은 인권도 유린당하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소위 국권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유일

13)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3.1), 『김정일선집』, 제13권, 362쪽.

14) 『국제법 사전』, 582쪽.

15)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120~122쪽.

16) 북한의 ‘국권’론은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배경으로 2003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4월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 대하여 “우리의 국권을 어찌보려는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3년 4월 3일.

지도체제, 나아가 사회주의제도의 유지를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인권 옹호 요구에 소극적임을 시사해 준다.

한편, 북한은 국제인권 규범에 대해서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을 “자산계급을 전 인류리의 대표자로 미화했다”라고 비판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의 계급적 한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이 “서방식 인권관의 본질을 폭로하며 인종주의자들의 인권유린행위를 반대하며 투쟁하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⁷⁾ 실제로 북한은 국제인권 규범에 이중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북한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의 인권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① 인권을 보편적으로 정의한 후, ② 그것에 계급적 관점을 부여하고, ③ 북한이 인권을 전면 보장하고 있는 반면 부르주아 혹은 제국주의국가들은 그 반대라는 식의 논지 전개방식이다. 다만 1990년대에 들어서 ③의 경우는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북한이 인권을 법적·물질적으로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1960~1970년대 문헌에서는 자주 발견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이 아니라 사회주의제도가 인권을 완전 보장한다는 식이다.¹⁸⁾

(2)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

북한에서도 비록 노동당의 지도하에 있기는 하지만, 헌법과 민법 및 민사소송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가족법, 노동법, 남녀평등법 등 인권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17) 『국제법 사전』, 300쪽.

18) 문순원, “주체의 인권관은 가장 과학적인 인권관,” 『사회과학원학보』, 40호(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 21~24쪽;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496쪽; 『조선말대사전 2』, 1696쪽.

의무와 함께 밝히고 있는데 이 둘은 사회주의적 요구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북한 헌법은 국가에 의한 실질적 권리 보장, 공민들 간 권리의 평등, 사회주의제도 발달에 따른 권리 확대, 민주주의적 권리 및 자유 확인 등으로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⁹⁾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헌법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법률이 개정된 바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에서 거주여행의 자유 신설(제75조), 개인 소유 주체의 구체화(제24조) 등 약간의 인권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다. 둘째, 북한은 형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권 개선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1999년 8월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 죄목을 33개항에서 5개항으로 축소하는 한편, 사형 제한연령을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2004년 개정 형법에서는 사형 부과 범죄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형벌도 세분화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⁰⁾ 셋째, 북한은 형법 개정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도 개정하였다. 200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이전에 통합되어 있던 재판을 1심, 2심으로 구분하였다(제9~10장). 사형집행 규정도 이전에 비해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¹⁾ 이 밖에도 북한은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개인 소유를 반영하여 상속법(2002년)과 손해배상법(2001년) 등을 제정하였다. 또 2003년에는 장애인보호법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²²⁾

19)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 이론』, 107~116쪽.

20)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북한법연구회 제93회 월례발표회(2004년 12월 9일).

21) 이금순 외, 『2005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05), 33~34쪽.

22)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취한 일련의 법제정비는 1992년 헌법 개정시 제시

한편, 북한에서 인권 관련 기구는 검찰소, 재판소,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중 검찰소와 재판소에 대한 기본 규정은 헌법에 하나의 독립된 절을 두어 제147조에서 162조까지 명시하고 있다. 검찰소 및 재판소는 각각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 검찰소 및 재판소도 있다. 검찰소의 임무는 법 준수 감시, 법령들 간의 불일치 감시, 범법자 적발 및 법적 책임 추궁 등이다. 재판소는 재판을 통하여 국가 주권, 재산, 인민의 생명 보호를 일차적 임무로 하고 있다.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는 모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 책임진다. 재판은 공개성, 독자성,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인민참심원제가 시행되고 있다.²³⁾

한편, 국가안전보위부는 반당, 반체제 주민들과 사상이반자 적발을 비롯해 방첩, 간첩색출, 국경경비, 대외정보수집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 보위부 검찰국은 반당, 반체제 주민 혹은 사상이반자들을 증인과 변호인 입회가 없는 비밀재판을 실시하고, 보위부 제7국농장지도관리국은 소위 ‘정치범수용소’²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남한의 경찰조직으로 볼 수 있는 인민보안성(구사회안전성, 사회안전부)은 반국가·반혁명 행위의 감시와 적발 및 처벌, 회색분자, 불평분자, 종파분자의 적발 및 제거, 비밀문서의 보관 및 관리,

된 것으로서(제18조 3항), 김정일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강화와 ‘혁명적 준법기풍’의 확립 강조에 의해 촉진되었다. 장명봉,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4)』, 통일사법정책자료 2005-1(법원행정처, 2005), 296~345쪽 참조.

23) 북한의 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김동한, “북한 사법제도의 현황과 전망,” 『북한정권 55년: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3), 71~93쪽 참조.

24) ‘정치범수용소’는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불인 용어로서 북한에서는 ‘○○호 관리소’, ‘○○○부대’ 등으로 불리고 있다. 상세한 소개는 이금순 외, 『2005 북한인권백서』, 217~238쪽 참조.

교화소 및 노동교양소의 운영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이 두 기관은 북한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상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권에 민감한 일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2) 북한의 인권 상황

1990대 후반부터 탈북자들이 속출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와 증언들은 많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 확인의 불가능과 탈북자 증언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반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잠정적이거나 사실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들 내용이 북한의 인권관과 관련 법제에 부합하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자.

(1) 자유권: 법제도 중심의 보고

먼저 자유권 영역에 있어서 북한헌법은 주권재민의 원칙(제4조, 제8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환권(제7조)까지 보장하고 있다. 인권이 특정 정치체제에서 더 향상되는지의 문제는 경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바,²⁶⁾ 여기서는 북한의 정치사회체제와 인권 상황을 연계하여 논의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1999년 12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자유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관련 정책을 실

25)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3) 참조.

26) Adamantia Polii, "Human Rights in Liberal, Socialist, and Third World Perspective," in Richard P. Claude and Burns H. Weston, eds.,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pp. 146~158 참조.

시하고 있다.²⁷⁾ 인권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1992년, 1998년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사회 생활영역들에 관한 원칙과 주요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북한은 기존의 형법을 개정하여 노동교화 기간 및 사형 대상 항목의 축소,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구체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그 밖에도 1990년 민법 제정을 통하여 재산소유 관련 조항을 만들어 공민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고, 같은 해 가족법을 제정하여 남녀평등, 가족보호, 혼인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 북한의 제2차 보고서는 또 생명권 보호와 관련한 법적 규정을 헌법 제79조 및 형사관련 법률, 형법 제45조, 제141~149조, 사회안전단속법 제35조, 형사보상규칙 제5조 3항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사형제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음모, 반역, 테러리즘, 반국가적 배신, 국제적 살인 등 극히 심각한 5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법률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형선고는 오직 중앙법원 또는 도법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사형 집행은 중앙법원의 승인요청에 의해 중앙인민회의의 승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 생명권과 관련하여 북한의 보고서에서 특이한 점은 ‘전쟁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의 생명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침략전쟁, 특히 핵전쟁을 인간생명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히면서, 생명권 보장에 있어 현재 우선적인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7) “Second periodic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4 May 2000, CCPR/C/PRK/2000/2.

이 밖에도 보고서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 체포 및 구금의 조건’에 관하여 자유와 안전의 권리, 피의사실 또는 체포이유의 통보, 체포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 예심단계의 구금 등의 항목에서 자세하게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관 및 관련 법제를 통해 볼 때도 인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생명권과 직결된 공개처형이다.²⁸⁾ 북한의 사형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판결판정 집행법 제32조에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공개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어 정치적 목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사형집행이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²⁹⁾ 이 밖에도 북한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 구금 및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서 법치(헌법 제18조)와 관련해서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보듯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그 실질적 이행에 있어서는 법치보다는 정치가 우위에 있는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³⁰⁾ 공권력 남용,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 및 뇌물 수수 등으로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은 김정일

28) 여기서 사형제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은 논외로 한다.

29) 이금순 외, 『2005 북한인권백서』, 34~42쪽. 물론 공개처형 때 대중들을 강제동원하느냐를 둘러싸고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2005), 136~138쪽.

30) Vítit Muntarbhor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0/01/2005, E/CN.4/2005/34.

에 의해 1990년대 초반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지만 식량난이 표면화된 이후에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¹⁾ 자유권 부분에서 가장 국제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과 관련된 인권 침해 논란이다. 그에 관한 보고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북한의 헌법뿐 아니라 김정일의 ‘인덕정치’론에도 어긋나는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³²⁾

(2) 사회권: 비교적 구체적인 실태 보고

둘째, 북한헌법은 노동권(제70조), 휴식권(제71조), 사회보장권(제72조), 교육권(제73조), 양성평등(제77조) 등 사회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자랑해 왔다. 북한이 2002년 국제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권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다.³³⁾

북한의 제2차 사회권 보고서는 사회권 규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사회급여에 관한 권리, 가족 보호,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유에 관한 권리, 교육권, 의무초등교육, 문화활동 참여 및 과학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등 10개 사항에 걸쳐 북한의 사회권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노동권(협약 제6조)에서는 헌법의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모든

31)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일군들을 키워내자”(1992.11.20), 『김정일선집』, 제13권, 252쪽;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118~126쪽.

32) 이금순 외, 『2005 북한인권백서』, 217~238쪽;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위의 책, 127~133쪽.

33)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5 May 2002, E/1990/6/Add.35.

인민들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며, 개인의 희망과 능력의 관점에서 일자리가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고용을 조직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 및 지역이 열악한 고용조건에 놓이는 현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협약 제7조) 중 임금 적도와 관련해서는 임금 수준이 노동 소모량, 유해성 정도와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르고, 일자리와 적절한 물질적·문화적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시행되므로 최저임금제도가 없다는 보고가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혀 임금 격차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협약 제8조)는 헌법 제67조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건강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노조의 결성 및 활동은 금지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가족 보호(협약 제10조)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가족의 의미에서부터 아동보호까지 7가지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 중 특이한 것은 등록되지 않은 결혼생활 금지(가족법 제11조), 모성보호제도에 관한 보고 내용이 1980년대까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³⁴⁾ 가족보호와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무상주거, 유급모성휴가제, 11년 보통의무교육 등 법·제도상 규정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법치보다는 온정주의, 위계적 관습이 온존하고 있고, 특히 식량난으로 경제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면서 사회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북한이 자랑해 온 무상교육, 무상의료

34) 1990년대 이후에 관한 보고는 다음 한 가지 내용이다. “인구밀도가 낮은 외딴 산간지역의 모성보호 의료서비스 수준은 도시에 비해 낮다. …… 외딴 산간지역에는 1990년 중반부터 이동성 모성보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여성 질환의 발생률이 줄었으나, 필수약품 및 의료장비의 부족으로 이동서비스의 확대와 순회주기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 사회적 기반이 위축됨으로써 사회권 전체보다는 기본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북한의 사회권이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수준에서의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권 향상을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1998년 이후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에 의한 제한과 관계 공무원들에 의한 자의적 법집행이 보고되고 있다.³⁵⁾ 이동의 자유가 북한 주민들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식량난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사회적 지위 향상도 북한의 전반적 사회권 향상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양성평등은 북한의 이념적 지향과 경제 동원의 필요에 의해 법제도적으로는 일찍부터 명문화되었고(헌법 제77조), 북한은 이 점을 오랫동안 과시해 왔다. 그러나 관련 보고서들은 북한의 사회 관습과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들이 실제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⁶⁾

4. 북한인권에 관한 내재적 시각의 의의와 한계

북한인권에 관한 내재적 시각은 그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동

35)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89~92쪽.

36)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Class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North Korea," July 2005; Good Friends, "Alternative NGO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ly 2005.

시에 한계 또한 있을 수 있다. 이 두 차원을 균형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 인권 개선 방안, 북한인권에 관한 인식 등 북한인권을 둘러싼 쟁점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내재적 시각의 의의와 한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내재적 시각의 의의

먼저 북한 역시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중요한 보편적 가치로 보고 있으며 관련 법제와 정책을 통하여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전개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계속되는 보고에 깊은 우려”³⁷⁾를 표명하고 있는 제 61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 내용을 비롯한 국제사회 일부의 북한인권 상황 평가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인권관은 북한의 정치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영역을 정치, 경제, 사문화 등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인덕정치’를 통하여 차별 없이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인권관과 관련 법제로 살펴보다도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는 내재적 시각이 비판을 내장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내재적 시각에서 북한의 실제 인권 상황을 완전히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현재까지 국제사회에 밝히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증언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들을 따를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을 내재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양호하지 않다고 잠정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37)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at the 61th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N.4.2005/L.30, April 11, 2005.

우려하고 있는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와 그 정도를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재적 시각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실제 인권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관련 현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재적 시각에 입각한 북한의 인권 개선 방안은 북한 스스로 인권 보호 및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과 맞물려 있다. 물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자체가 내재적 시각에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내재적 시각은 양자의 역할 설정에 있어서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과 조건을 존중하고, 북한의 역할을 가능한 최대로, 그리고 먼저 파악하는 데 의미를 가진다. 관련국의 인권 개선은 관련국 정부와 시민이 일차적 주체이고 국제사회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때,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지금과 같은 갈등이 아니라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인권을 내재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북한연구에 있어서 오리엔탈리즘³⁸⁾ 인권 근본주의의 오류를 발견하고 인권의 의미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준다. 관찰자가 행위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비판의 한 방법이지만, 관찰자가 행위자를 대상화하거나 타자화하는 것은 객관적 관찰 태도가 아니라 완벽한 객관적 연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 안팎으로 제기되는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서도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38)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의 지리적 경계를 인식론적 차별로 전환하여 ‘열등한’ 동양(혹은 비서구)이 ‘우등한’ 서양으로부터 배우고 서양을 따라야 한다는 담론으로서 동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구조화하는 이념적 도구라 할 수 있다. 북한연구에서 오리엔탈리즘 비판은 구갑우, “북한인식의 정치적 회로—국제관계학의 오리엔탈리즘 비판,” 한국정치연구회 편, 『정치비평』, 제10호(2003), 290~310쪽 참조.

내재적 시각이 행위자의 목적과 그 결과를 구분함으로써 비판을 내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북한인권 논의에서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데 내재적 시각이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 근본주의에 입각한 북한인권 비판은 인권이 중요한 가치이듯이 평화와 화해 역시 중요한 가치임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거기에는 인권=개인의 시민적·정치적 자유라는 협소한 인권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인권이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에 기초하고 그 해결책으로 북한정권 붕괴를 제시하는 주장은 인권이 자기성찰을 동반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동시에, 북한인권 비판을 자아의 비인권을 은폐하거나 해소하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살 수도 있다.

2) 내재적 시각의 한계

내재적 시각에 따른 북한인권 접근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역시 분명하다. 첫째,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내재적 시각에 입각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 북한이 실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 및 현장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실제 인권 상황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북한의 인권관 및 관련 법제로 평가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향상에 최선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① 북한의 인권관은 북한의 특수한 입장이 반영된 상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②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는 실질적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구체적인 개선점들을 안고 있으며, ③ 독립적 인권이행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당교시가 법치보다 상위

에 놓여있고, ④ 사회적으로는 인권의식이 저급한 상태에서 위계적 생활관습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이 인권=국권=자주권이라는 등식을 세워놓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려면 군사중시, 총대중시로선을 더욱 역세계 틀어쥐고나 가야 한다”³⁹⁾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재적 시각에 따른 북한인권 논의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관은 국제인권례짐에서 밝히고 있는 보편적 원리⁴⁰⁾에 의해 보충되고, 인권 관련 법제 개선은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해당 국제인권협약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참고할 수 있다. 북한이 가입한 해당 국제인권협약위원회에 법제도 중심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보 통제를 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는 것은 실효적인 인권개선에 역행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상황 파악 및 평가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4개 국제인권협약서명국인 점에 착안하여 관련 국제인권협약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인권 개선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도 내재적 시각을 적용하는 데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행위자의 고차원의 행동 목적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축소 혹은 제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북한의 인권 관련 인프라, 특히 자유권을 신장할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지와 사회권을 향상할 북한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얼마인가 하는 점이 구체적인 평가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자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39) 문순원, “주체의 인권관은 가장 과학적인 인권관,” 24쪽.

40)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비엔나 인권선언이 밝힌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말한다.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2 July 1993, A/CONF.157/23.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협약위원회의 지적, 즉 국제인권협약이 실제 북한의 국내법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의 문제도 내재적 시각에 입각한 북한인권 개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북한과 국제인권기구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02년, 2003년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아동권협약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였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북한은 2005년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기술협력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⁴¹⁾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의 현 조건과 능력으로 볼 때 인권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인권레짐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가입한 4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해당 협약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인권협약이나 선택의정서들이 적지 않다.⁴²⁾ 결국 북한은 스스로 수립한 인권관 및 관련 법제의 이행을 통해 인권 상황을 ‘주체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그 한계를 인식하고 인권 향상을

41) 2005년 2월 28일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이철 대사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한 서신에서, 북한은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언급하고 있는 ‘기술협력’에 관해 원칙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북한인권 결의안이 사라질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02/03/2005, E/CN.4/2005/G/13.

42) 5장 참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레짐을 수용할 과제를 안고 있다.⁴³⁾

마지막으로, 북한인권을 논의할 때 내재적 시각은 인식론의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이는 바, 그것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에 기존의 북한인권관으로만 설명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인권정책에 외재적 시각, 구체적으로 국제인권레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의 인권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에서는 개인의 사적 소유, 시장경제를 반영한 내용들이 발견된다.⁴⁴⁾ 물론 이것이 북한의 기존 인권관을 대체하거나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와 그에 따른 개인의 사회경제적 권리 의식 확대를 전망할 때 내재적 시각으로만 새로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이 4개 국제인권협약 가입국이고 그 이행과 인권협약의 추가적 가입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북한인권을 내재적 시각만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안보·경제가 자위·자립 노선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역시 행위자의 행동원리와 그에 따른 대내정책으로만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이행 문제는 한편으로 북한이 가입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 시각의 논의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평가 기준 및 이행 감독은 해당 협약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외재적 시각의 논의영역이라고 하겠다. 이는 북한인권에 관한 내재적 시각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실제 사례연구에서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5

43)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한 국가인권행동계획 참조. 각주 40 참조.

44) 북한법연구회 편,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집』(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참조.

장에서는 이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5. 두 시각의 상호보완성 탐색

1)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은 2005년 12월 현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으로 줄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으로 줄임),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으로 줄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줄임) 등이다.

첫째, 북한은 자유권규약에 1981년 9월에 가입해, 최초보고서를 1983년 10월 24일, 그에 대한 보충보고서를 1984년 4월 2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둘째, 북한은 사회권규약에 1981년 9월에 가입하고, 1989년 1월 14일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 1999년 11월 사회권위원회로부터 검토받은 바 있다. 셋째, 북한은 아동권협약에 1990년 9월 21일 가입하고 한 달 후 효력을 발휘시켰다. 이는 북한이 1981년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에 각각 가입한 이후 약 10년 만에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사례이며 아무런 유보조건 없이 이루어졌다. 아동권협약 가입·비준 이후 북한의 대내적 법·제도 정비와 국제사회를 향한 반응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조정위원회 설립, 헌법 및 각종 법률에 아동 권리 조항 삽입, 두 차례에 걸친 아동권리 이행 보고서 제출, 두 차례의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이 그것이다.⁴⁵⁾ 북한은 아동권위원회에

1996년 2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2년 5월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넷째, 북한 정부는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다음 달 효력을 발휘시켰고, 2003년 9월 11일 최초 협약이행 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다.⁴⁵⁾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조사(Part I)와 협약 규정과 관련된 정보(Part II)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정부의 보고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상의 이행 조항(제1~16조)과 중재재판(제29조)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위 4개 국제인권협약에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데 있어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 내용이 주로 법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으로 북한의 실제 관련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북한은 자유권규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 규약 제1, 2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및 동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아동매춘 및 포르노그라피관련 아동권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장투쟁참여관련 아동권 선택의정서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2) 두 시각의 공존: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북한이 가입한 4개 국제인권협약에 한정하여 검토해 볼 때 북한의

45)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5 November 2003, CRC/C/65/Add.24, pp. 5~13; 이금순 외, 『2005 북한인권백서』, 204~205쪽 참조.

46) “Initial of report of States Par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9 September 2002, CEDAW/C/PRK/1. 북한은 협약 제2조(1)항, 제9조 2항, 제29조 1항의 이행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 이행 수준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권규약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침해 등에 관하여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 북한 정부는 사회권을 생존권 중심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자결권을 집단 중심으로 인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동권리와 여성차별 철폐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가부장적 위계문화가 결합되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및 이행 현황은 내재적·외재적 시각에 의한 분석이 공존하는 공간인 동시에 양자의 상호보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은 가입한 4개 국제인권협약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평가를 받고 그 결과인 최종견해를 존중하고 추후 개선 노력 및 그 결과 보고를 약속하고 있다. 반대로, 해당 협약위원회 역시 북한과 함께 보고서 심의평가를 하면서 북한 당국의 고충과 인권보호 노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북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이행은 한편으로 북한의 보고서를 통하여 행위자의 행동결과를 행위자의 목적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해당 협약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견해를 통하여 행위자의 행동 목적 및 결과를 관찰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양자 간 상호 협력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가입한 해당 국제인권협약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구체적인 협약 이행 현황보다는 관련 법제도적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시기상으로는 1980년대까지를 주로 다루면서 1990년대 상황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로 인한 인권 상황 약

화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 정부의 보고서가 갖는 이런 한계는 일부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의 대안보고서에 의해 사실 확인, 누락된 실태 보고 등으로 보충될 수 있다.⁴⁷⁾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인권 보고서 내용은 양면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먼저 법·제도 중심의 보고서 내용은 해당 분야에서 실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나 협약 이행 관련 자료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과 현장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는 적어도 각각 7회씩,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는 3회씩 관련 정보제공을 북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법·제도 중심의 북한의 인권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도를 국제인권협약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다.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곧바로 요구하는 것 보다는 국내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법·제도를 만들어 비인권적 의식과 관행을 철폐하고 국가정책과 사회생활 전반을 인권 옹호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각 국제인권협약 위원회에 제출한 법·제도 중심의 보고서는,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인권 관련 법·제도를 구현하고 그것을 국제인권협약 내용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북

47)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op. cit.*; Good Friends, *op. cit.*; Good Friends, "Alternative NGO Report on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2003; Good Friends, "Alternative NGO Report on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2004.

한의 보고서는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과 사회적 관습이 인권 상황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인권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북한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채택된 인권결의에 보인 반응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⁴⁸⁾ 이와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 각 국제인권협약 가입국의 보고서 제출과 그것을 심사하는 협약위원회와의 대화 및 인권고등판무실과의 기술협력은 해당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수준과 방식으로 인권 향상을 도모하는 합리적 기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제출한 각 보고서는 1990년대 인권 상황 악화 요인으로 자연재해를 일차적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심각한 피해와 복구 노력에 전념해 온 사정으로 구체적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북 식량지원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향상시키고 그 수준을 국제인권협약에 가까워지도록 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북한 연구시각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이 내재적 시각과

48) 예를 들어 북한은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2005.4)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상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기술협력 권고를 거부한 반면, 아동권리위원회와는 2004년 위원회 일행의 방북을 허용하고 현재 유니세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는 등 협력에 임하고 있다.

외재적 시각을 상호대립적으로 이해하고, 사례연구 없이 추상적 수준에서 전개되어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인권이라는 구체적인 연구사례를 갖고 두 시각의 상호보완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재적 시각은 행위자의 행동원리 및 목적으로 그 행동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내재적 시각에 의한 분석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이 밝히고 있는 인권관과 인권 관련 법제에 비추어보아도 양호하지만은 않다는 점과 북한 스스로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동시에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내재적 시각은 북한의 인권 상황 전체를 파악하고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내재적 시각은 북한의 인권관과 관련 법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외재적 시각은 북한인권의 한계 지점을 설명하는 데 각각 상대적으로 더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시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이행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두 시각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인권 상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입장과 여건을 먼저 객관적으로 이해한 다음 인권 상황을 특정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인권개선 방안의 모색 역시 당사자의 의지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 한계를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은 내재적 시각의 의의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그 한계 범위를 포착하여 외재적 시각의 역할, 곧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의 접합점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특정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지향은 관련 행위자를 타자로 호

명하여 비판하거나 비판을 통한 자기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성찰과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인권을 사례로 한 본 연구의 논의가 내재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도출하고, 그 보완으로 외재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을 하나의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상충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절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위자로서 북한의 이중성, 분석 대상으로서 북한인권의 중층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명할 수 있으나, 앞으로 보다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두 시각의 적실성과 양자 간 상호보완관계의 지점을 더욱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와 가입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본 연구에서 인권 범주를 자유권, 사회권으로 한정하여 환경, 평화, 개발 등 소위 제3세대 인권 영역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도 안고 있다. 북한인권이 놓여 있는 맥락과 인권론의 발전을 기대할 때 추후 반드시 필요한 연구주제라 하겠다.

북한연구에 있어서 연구시각은 북한에 대한 연구자의 숨겨둔 정치적 견해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연구목적 및 그 대상에 따른 적절한 인식론적 준거로 기능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북한연구는 연구시각을 연구방법론과 결합하여 다양한 사례연구를 더욱 풍부히 할 때 ‘과학적 지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월 28일 / ■ 채택: 3월 20일

참고문헌

<북한 문헌>

1) 단행본

- 『국제법 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한수산 편, 『정치사전』(목단강: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1991).

2) 논문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1993년 3월 1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일군들을 키워내자”(1992년 11월 20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문순원, “주체의 인권관은 가장 과학적인 인권관,” 『사회과학원학보』, 40호(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

<국내 문헌>

1) 단행본

-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2005).
북한법연구회 편,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집』(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이금순 외, 『2005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05).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3).

2) 논문

- 구갑우, “북한인식의 정치적 회로—국제관계학의 오리엔탈리즘 비판,” 『정치비평』, 제10호(한국정치연구회 편, 2003).
- 김동한, “북한 사법제도의 현황과 전망,” 『북한정권 55년: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3).
- 장명봉,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4)』, 통일사법정책자료 2005-1(법원행정처, 2005).
- 정태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인권운동사랑방 등 주최 ‘북인권 1차 워크숍’ 발표(2005년 11월 30일).
-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 방법론』(서울: 한울, 2003).
-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북한법연구회 제93회 월례발표회(2004년 12월 9일).
- Park, Sunso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U.S. Policy,”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2005).

3) 신문

『연합뉴스』, 2003년 4월 3일.

4) 기타자료

-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Class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North Korea,” July 2005.
- Good Friends, “Alternative NGO Report on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2003.
- _____, “Alternative NGO Report on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2004.
- _____, “Alternative NGO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ly 2005.

<국외 문헌>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 Cultural Righ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5 May 2002, E/1990/6/Add.35.
- "Initial of report of States Par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9 September 2002, CEDAW/C/PRK/1.
-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02/03/2005, E/CN.4/2005/G/13.
- "Second periodic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4 May 2000, CCPR/C/PRK/2000/2.
-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5 November 2003, CRC/C/65/Add.24,
-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at the 61th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N.4.2005/L.30, April 11, 2005.
-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2 July 1993, A/CONF.157/23.
- Vitit Muntarbhor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0/01/2005, E/CN.4/2005/34.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Internal Viewpoint in the Stud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o-Hyuk Suh(Han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sit the contentions on the viewpoints of North Korean studies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looking at things from an internal point of view is useful when critically analyzing North Korea's actions from its principles and intentions. In practic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not necessarily positive according to North Korea's own viewpoint of human rights and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it could be said that North Korea itself can improve the situation in some areas.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l point of view is limited in that it cannot grasp the whol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or can it find a complete solution for improving the situation. Therefore,

internal and external viewpoints can be mutually complementary for these tasks. As an example, the two points of view can be applied simultaneously in explaining the North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is study does acknowledge that a logical discord between the two viewpoints does exist, and a limited definition of human rights that excludes “Third Generation” rights also must be dealt with. A search for a more accurate definition of the concept involved and further case studies are recommended.

Key Words: North Korean human rights, internal/external points of vie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서보혁

현재 한신대학교 강사 및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199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탈냉전기 북미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2003). 저서로는 『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2003), 『탈냉전기 북미 관계사』(2004),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I』(공저, 2005)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정체성 정치와 국제안보의 재구성”(2003), “When Human Rights Mee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2004) 등이 있다.